#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60 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김재원·문대림·김선민

신장식 · 강경숙 · 정춘생

황운하 • 박은정 • 서왕진

김준형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(服制)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에서 정하도록 하 고 있는바,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, 착용기간,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·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,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,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,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, 기능성과 안전성, 심미성 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·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 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,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사항은"을 "그밖의 사항은"으로 한다.

- ②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 방공무원이 기후환경,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(服飾)을 착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능성과 안전성, 심미성(審美性)을 갖춘 적정한 복식을 연구·개발 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3조(복제) ① (생 략)	제23조(복제) ①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		
	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		
	하여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,		
	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		
	복식(服飾)을 착용할 수 있도록		
	하여야 한다.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		
	직무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		
	위하여 기능성과 안전성, 심미		
	성(審美性)을 갖춘 적정한 복식		
	을 연구·개발하고 이를 보급		
	<u>하여야 한다.</u>		
② 소방공무원의 복제(服制)에	<u>4</u>		
관한 <u>사항은</u> 행정안전부령으로	<u>그 밖의 사항은</u>		
정한다.	,		